

공학교육혁신센터 규정

□ 제정 : 2004. 09. 01.

□ 개정 : 2006. 08. 22.

□ 개정 : 2007. 10. 06.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수원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(이하 “센터”라고 한다)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소재지) 센터는 수원대학교 내에 둔다.

제3조(사업) 센터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
1. 공학교육과정 분석 개발
2. 산학협동, 설계교육 연구 및 지원
3. 공학교육혁신 관련 DB구축
4. 공학교육인증 평가 지원
5. 공학교육혁신 관련 대내외 활동 총괄지원

제2장 조 직

제4조(조직) 현재 부속기관 산하조직으로 설치되어 있는 센터는 총장 직속의 기관으로 설치한다.

제5조(센터장) ① 센터에 센터장을 둔다.

- ② 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,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- ③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,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.
- ④ 센터장의 직위는 교무위원급으로 한다.

제6조(간사) ① 센터에 간사를 둔다.

- ② 간사는 센터 위원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하고,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- ③ 간사는 센터장을 보좌하며, 센터의 업무를 수행한다.

제7조(위원) ① 위원은 센터의 연구활동과 부합하는 전공을 가진 본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센터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
- ② 위원은 임기를 두지 아니하며, 필요에 따라 해촉할 수 있다.

제8조(전임연구원) ① 센터에 전임연구원을 둘 수 있다.

- ② 전임연구원은 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공과대학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- ③ 전임연구원의 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9조(조교) ① 센터에 조교를 둘 수 있다.

- ② 조교의 임용은 본교의 조교 임용 규정에 따른다.
- ③ 조교는 센터장과 간사의 지시를 받아 위원의 활동을 보좌한다.

제10조(공학교육혁신위원회) ①공학교육혁신위원회는 센터장, 공과대학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, 각 학과당 최소 1인의 대표를 위원으로 구성하고 센터장이 위원장이 된다.

② 공학교육혁신위원회는 제3조의 사업들을 심의·의결한다.

제11조(공학교육운영위원회) ①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
②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고, 운영위원은 간사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사업계획

2. 센터의 예산편성과 결산

3. 연구과제 배정

4. 기타 주요사항

④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2조(운영세칙) 본 규정 이외의 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3장 재 정

제13조(운영경비) 센터의 운영경비는 다음에 의하여 충당한다.

1.정부지원금(산업자원부 지원금)

2.학교 보조금

3.지자체 보조금

4.기타

제14조(회계년도) 회계년도는 수원대학교 회계년도와 동일하게 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06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운영되고 있는 공학교육센터 관련 제반 업무는 이 규정에 의거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③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.